



제42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대행위자 분리 조치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고 제도 신설〉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401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3
-----------------	---

I. 개요

1.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40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미화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5. 8.
- (3) 회 부 일 : 2025. 5. 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즉시 피해장애인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규정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 조치하는 데만 중점을 둔 것으로, 피해장애인이 피해장애인 쉼터 등의 보호시설로 인도를 거부하면서 동일한 시설을 계속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안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피해장애인이 보호시설로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법경찰관리가 일정기간 동안 학대행위자를 피해장애인과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조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학대행위가 발생한 기관의 장에게 피해장

애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학대를 예방하고자 함 (안 제59조의7제3항 및 제9항 신설 등).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① 학대받은 장애인이 보호시설이나 타 시설로의 인도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학대행위자를 일정기간(최대 72시간, 공휴일 포함 시 최대 120시간)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이후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학대 발생 기관의 장에게 보호 대책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7제3항 및 제9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② (생략) <u><신설></u>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학대받은 장애인이 제2항에 따른 인도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학대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학대행위자를 학대받은 장애인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대행위자 분리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학대행위자 분리조치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장애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⑦ (생략)

<신설>

⑧ 제7항의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19(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①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4항-----

-----.

⑥ 제4항-----

-----.

⑦·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⑨ 제3항에 따른 분리조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학대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장애인 학대가 발생한 기관의 장에게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⑩ 제8항-----

-----.

제59조의19(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① (현행과 같음)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u>제59조의7제7항</u>에 따른 신분조회 등 조치, 제59조의11제3항에 따른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③ (생략) 제86조(벌칙)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5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u>제3항</u> 또는 <u>제5항</u>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 3. (생략) ④·⑤ (생략) 제90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의4. (생략) 3의5. <u>제59조의7제6항</u>을 위반하여	② -----<u>제59조의7제8항</u>----- ----- ----- ----- -----. ③ (현행과 같음) 제86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현행과 같음) 2. ----- -----<u>제4항</u>----- <u>제6항</u>----- ----- ----- ----- 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9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3의4. (현행과 같음) 3의5. <u>제59조의7제7항</u>-----
--	--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3의6. ~ 7. (생략) ④ (생략)	----- ----- 3의6. ~ 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

2. 검토의견

□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제2항에서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피해장애인쉼터 또는 위기발달장애인쉼터와 같은 보호시설 등으로 인도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받은 장애인의 인수를 거부한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피해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

3. 의료기관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숙인일시보호시설

7.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0.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11. 그 밖에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9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9조의7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받은 장애인의 인수를 거부한 자

□ 그러나 피해장애인 또는 보호자 등이 보호시설 등으로의 인도¹⁾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비한 후속 보호조치에 대한 법률상 규정은 없음.

- 다만, 생명이나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더라도, 경찰이나 구급대 등의 협조를 받아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는 방안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내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음.²⁾

□ 이에 개정안은 피해장애인이 보호시설 등으로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일정 기간 학대행위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학대 발생 기관의 장에게 피해장애인 보호대책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실효적인 보호조치 및 사후관리체계 강화를 도모하려는 입법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보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는 172건이 실시되었으며, 이 중 쉼터 이용 84.3%(145건), 기타 장소 5.8%(10건), 거주시설 5.2%(9건), 의료기관 4.7%(8건) 순으로 보고되었음.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와의 면담 내용(2025년 5월 28일)

□ 첫째, 개정안은 피해장애인이 보호시설 등으로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일정 기간 학대행위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신체의 자유 또는 거주·이전의 자유 등과 같은 헌법상 기본권³⁾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절차적 통제 장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의 판단만으로 학대행위자를 일정기간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분리 조치의 요건, 관련 절차 등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도입하면서도,

사법경찰관의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는 예외적 수단으로만 인정하고, 퇴거 및 접근 금지 등과 같은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임시조치를 통해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긴급임시조치가 있는 후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고 지체없이 검사에게 신청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3)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한함으로써, 현장 조치의 신속성과 기본권 보장의 정당성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고 있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1의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5.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이하생략.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이하생략.

제6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검사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참고로,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절차를 별도 법률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되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771호)⁴⁾은

장애인학대범죄 현장에서 사법경찰관이 피해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학대행위자를 즉시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규정하면서도(제26조),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재학대 우려 시 긴급임시조치(제27조) 및 법원의 임시조치로 연계되는 단계적 보호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제28조),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학대행위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재 근거도 함께 마련하고 있음(제49조).

또한, 제정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경우 외에는 동 제정안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심사 과정에서 「장애인학대

4) 동 제정안은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4.30.)에서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을 마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었음.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개정안 간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관해서 심사 추이를 지켜보며 판단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26조(피해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장애인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장애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피해장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피해장애인이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나 피해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장애인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장애인학대행위자를 피해장애인으로부터 격리(사법경찰관리가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피해장애인을 장애인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장애인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피해장애인을 분리·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장애인을 인도받은 보호시설·의료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29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다.

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속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에는 피해사실의 요지,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제27조(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장애인, 그 법정대리인(장애인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

치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임시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법원은 장애인학대범죄의 원만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장애인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장애인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傍室)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장애인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장애인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への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피해장애인에 대하여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둘째,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의 분리조치 이후에도 재학대 우려가 있을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장애인학대가 발생한 기관의 장에게 피해장애인 보호대책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학대 사건이 거주지, 거주시설 등 다양한 장소⁵⁾에서

5)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44.0%(624건, 장애인거주시설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의 이행 대상을 ‘장애인학대가 발생한 기관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외 장소에서 발생하는 학대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 대비한 이행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권고 이행 대상의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이행 여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거나 일정 주기로 점검·공개하는 등 이행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의 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시행 시점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사법경찰관리에 의한 학대행위자 분리조치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고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 ① 분리조치의 요건과 방식 등에 대한 세부 지침 마련,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고에 관한 표준서식과 이행 점검 체계 구축, ③ 제도 신설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간 협력체계 정비 및 안내·홍보 등 적지 않은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13.2%(187건), 학대행위자의 거주지 7.5%(107건), 기타 6.1%(87건), 상업시설 5.3%(75건), 교육기관 4.9%(69건)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관계부처 및 단체의견

가. 보건복지부

-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해 긴급분리를 통해 상황을 조기에 종료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등 시설 내 학대 피해장애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함.

다만, 학대피해 장애인이 분리조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학대행위자를 피해장애인과 강제로 분리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학대는 시설뿐 아니라 가정 등 다양한 공간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시설 내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시설 외 학대 사례에는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아울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제정법안인 「장애인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해 관련 내용이 검토되는 것이 아동학대나 가정폭력범죄 사례나 법률 체계 고려 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경찰청

- 현행법은 응급조치로 피해장애인을 보호시설에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동일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개정안은 시설 내 학대와 가정 내 학대를 구분하지 않고 학대행위자의 일률적 분리를 규정하고 있어, 보호자 외 대체 인력이 없는 가정의 경우 피해자 보호에 오히려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참고로, 분리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도 현행법 제59조의12에 따른 가정·시설 방문, 전화상담 등 사후관리 조치는 가능함.

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학대피해장애인을 신속히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피해자가 분리조치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도 학대행위자를 강제 분리하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법률행위로, 헌법상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가정폭력처벌법」상 긴급임시조치가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 법원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면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 요건과 절차 마련이 필요함.

아울러,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제정 절차 중인 점을 고려하면, 법안 간 기능 중복 및 정합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학대피해장애인의 보호조치 방식에 현실적인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조치로, 입법취지에 공감하지만,

분리조치가 사법경찰관리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분리기간의 명확한 설정, 판단 기준의 구체화, 이의제기 절차 도입 등 피해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적절한 절차적 기준 마련이 필요함.

마.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사법경찰관리의 분리 조치 시행에는 시설 협조가 필수적이거나, 개정안은 시설의 역할이나 부담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고려 없이, 법적·행정적 책임만 부과하고 있음.

아울러, ‘권고’라는 표현은 자율성을 시사하지만, ‘특별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한다’는 문구를 통해 사실상 강행규정으로 작용하므로, 시설의 자율성과 복지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설 지원, 전담 보호공간 확보, 긴급 대응 인력 확보 등 보완 규정이 추가로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02